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창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0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10월 14일

발 의 자: 남창진 의원(1명)

찬 성 자: 경기문,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지향, 김춘곤, 도문열,
박성연, 박승진, 박영한,
박춘선, 박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민석,
이봉준, 이상욱, 이영실,
이종태,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31명)

1. 제안이유

- 1996년부터 시행된 혼잡통행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회피하는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혼잡도가 증가하는 경우 혼잡도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우회도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 나. 시장이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회도로”란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삭제</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5. <u>“우회도로”란 제3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통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도로로, 시장이 따로 고시한 도로를 말한다.</u></p> <p><u>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 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p>

문서번호

20221006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남창진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김지혜 주무관

접수일 : 2022.10.06.

회신일 : 2022.10.07.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시장은 혼잡통행료 부과로 우회도로의 혼잡도가 증가한 경우 이를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의2(우회도로의 혼잡도 완화 방안 마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계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5
	e-mail : kjh0123@seoul.go.kr